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47호)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74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34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83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9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산후조리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7
III . 검토의견	15
1.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김도읍 의원안)	15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김남근 의원안)	23
3.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박지혜의원안)	31
4.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 마련 (백혜련의원안)	38
5.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김도읍의원안)	45

I. 제안경위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4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3. 25.

(3) 회 부 일 : 2026. 0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2.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6. 06. 19.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서울 지역은 평균 500만 원을 넘어가며, 최고 급 시설인 경우 2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음. 산후조리원은 이미 산모들이 출산 직후 당연히 거치는 돌봄서비스의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높아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

한 공약이 다수 제출된 바 있음. 서울시는 6. 3. 지방선거 이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비용 지원만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현행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산후조리원 470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3.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6. 30.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4.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7. 01.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5.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7. 10.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신부, 한부모가족의 임신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임신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Ⅱ. 산후조리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1. 현행 제도

-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고,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제10호).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18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15조의2).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기록부 구비 및 임신부·영유아 건강 상태 기록·관리, 소독 등 환경관리 등을 지켜야 함(법 제15조의4).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u>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법 제15조의17제1항). 나아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법 제15조의 17제2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u>공공산후조리원</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후조리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은 총 480개로,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9개, 민간산후조리원은 451개임.
- 입실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69.1%, 민간산후조리원이 55.9%이고,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9.5명, 민간산후조리원이 13.4명임.
-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170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이 343만원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80	29	451	69.1	55.9	9.5	13.4	170	3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전국 29개의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강원 8개소, 전남 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 명)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1	서울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2014-02-27	27	30
2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2023-12-01	12	12
3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07-26	28	28
4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19-05-03	13	13
5	경기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05-02	20	20
6	강원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2016-02-16	13	15
7	강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2-24	10	11
8	강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02-01	5	6
9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7-13	8	8
10	강원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05-24	7	8
11	강원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2025-11-18	10	12
12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2025-12-24	10	11
13	강원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2026-04-13	10	10
14	충북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5-07-28	13	16
15	충남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02-07	8	9
16	충남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2025-10-22	15	16
17	전북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2026-01-12	13	13
18	전남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2015-09-01	10	12
19	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8-05-18	10	10
20	전남	완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9-06-11	10	10
21	전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0-12-07	16	18
22	전남	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03-15	10	10
23	전남	여수시 공공산후조리원	2026-01-28	15	15
24	전남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	2026-03-03	16	16
25	경북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09-15	8	10
26	경북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31	12	14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27	경북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28	13	13
28	경남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04-29	8	8
29	제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2013-03-29	11	15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남 14개, 경북 14개, 전북 11개, 경남 11개 등으로 총 94개의 지방자치단체임.

<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 현황 >

(단위: 개소)

지역	지자체수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서울	25	-	-
부산	16	3	중구, 영도구, 사상구
대구	9	3	중구, 남구, 군위군
인천	10	4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1	동구
대전	5	2	중구, 대덕구
울산	5	1	울주군
세종	1	-	-
경기	31	7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18	6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11	8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15	9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14	11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22	14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지역	지자체수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진도군, 신안군
경북	22	14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18	11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2	-	-
합계	229	94	9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Ⅲ. 검토의견

1.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 (김도읍의원안)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 후조리원 설치) ① (생 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 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u> ③ ----- ----- ----- -, ----- <u>우선이용</u> <u>여부 등</u> ----- ----- -----.
---	---

□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의17제2항)¹⁾.

○ 동법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별표 2의2).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부담 관련 사항 >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2. 운영기준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호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 이외에도 거주기간, 출산순위, 관내 의료기관 분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조례로써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역	산후조리원명	지원 대상 및 규모
서울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자 3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20% 감면
서울	서대문구	- 서대문구 1년이상 거주 이용요금 90% 감면

지역	산후조리원명	지원 대상 및 규모
	공공산후조리원	- 서대문구 1년 미만거주, 이용요금 20%감면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 취약계층 50% 감면 - 북구 외 주민 20% 가산
경기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 수급자 및 차상위 산모 2.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4.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자 6.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7.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8.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이용료의 50% 감면
경기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1. 수급자 및 차상위 산모 2.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 산모 6.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둘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9. 포천시 거주 1년 이상 * 1~8번 이용료의 50% 감면, 9번 이용료의 30% 감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 삼척시 1년 이상 거주자 100% 감면 - 본원(삼척의료원) 분만자 10% 감면
강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 1년이상 거주 50% 감면 - 1년미만 거주 10% 감면 - 1년 미만으로 거주하여 50% 사용 후 거주 1년 경과 시 70%에 대한 차액 환급
강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출산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와 배우자 - 1년 이상 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 100% 감면 - 1년 미만 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 50%감면 - 취약계층 100% 감면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 양구 거주 1년 미만 70% 감면 - 양구 거주 1년 이상 100% 감면 - (외)조부모 양구 3년 이상 거주 시 30% 감면 - 취약계층 70% 감면
강원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감면대상 9종 - 양양군 거주 1년 이상 - 양양군거주6월이상~1년미만 - 양양군거주1년미만 -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지역	산후조리원명	지원 대상 및 규모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 5개월이상 거주 50% 감면 - 취약계층70%감면
강원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 1년이상거주80% - 1년미만:60% - 정선.평창30%
충북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 5개월 이상 제천시 거주 50% 감면 - 5개월 이상 충청북도 거주 15% 감면 - 취약계층 등 50% 감면
충남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홍성의료원 분만 10% - 홍성군민 30% - 둘째자녀 40% - 모자보건법 취약계층 50%
충남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 취약계층 50% 감면 - 둘째 자녀 40% 감면 - 1년이상 거주 30% 감면 - 관내 병원 분만한 충남 등록거주자 10%
전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둘째아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산모,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가족, 귀농어 귀촌인 : 이용료 70% 지원
전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둘째아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산모,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가족, 귀농어 귀촌인 : 이용료 70% 지원
전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둘째아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산모,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가족, 귀농어 귀촌인 : 이용료 70% 지원
전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 둘째아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산모,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가족, 귀농어 귀촌인 : 장흥군산모:이용요금 70%지원 - 완도군첫째아 70%지원
전남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이상,미혼모,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어·귀촌인 70%감면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50% 감면
경북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 경상북도 1년이상 거주 : 10% 감면 - 김천시 1년이상 거주 : 30% 감면 - 김천시 거주 시민 중 취약계층 : 50% 감면
경북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 상주시민 30% 감면 - 경북도민 10% 감면 - 취약계층 50% 감면

지역	산후조리원명	지원 대상 및 규모
경북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 경북도민 10% 감면 - 울진군민 30% 감면 - 취약계층 50% 감면
경남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 취약계층 70% - 밀양시다자녀20%추가감면
제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유족·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셋째 자녀 이상 또는 다태아 출산 산모 감면내용:이용료감면(70%) ※ 단, 첫째아 60% 감면

주: 2025. 12.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대통령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우선이용과 이용료 감면 대상을 변경할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법체계 상 법률에서 취약계층을 전부 명시하기보다는 현재처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것이 향후 우선 이용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기에 용이하고, 법률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행법 체계 고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등을 우선 이용 가능 대상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나아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정안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김남근의원안)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
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
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
에서 “ <u>공공산후조리원</u>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
후조리원 설치) ① -----

<u>. 다만,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
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장
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
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u>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의17제1항)2).

○ 즉,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민간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은 343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170만원)에 비해 높고,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총 480개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9개, 민간산후조리원은 451개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상황임.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80	29	451	69.1	55.9	9.5	13.4	170	3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장에게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낮은 이용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정안의 기준에 비해 34개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개정안상 필요 개소수 및 부족 개소수 >

시도	산후조리원 현황		개정안		
	민간	공공(A)	인구(2025)	필요 개소 수(B)	부족 개소 수(B-A)
서울	114	2	9,315,066	9	7
부산	20	-	3,235,362	3	3
대구	21	-	2,363,643	2	2

시도	산후조리원 현황		개정안		
	민간	공공(A)	인구(2025)	필요 개소 수(B)	부족 개소 수(B-A)
인천	21	-	3,093,590	3	3
광주	7	-	1,431,903	1	1
대전	8	-	1,469,299	1	1
울산	7	1	1,103,509	1	-
세종	8	-	392,471	-	-
경기	147	2	13,967,870	13	11
수원시	17	-	1,221,616	1	1
고양시	12	-	1,036,961	1	1
용인시	14	-	1,085,182	1	1
화성시	14	-	1,027,532	1	1
강원	15	8	1,518,938	1	-
충북	9	1	1,656,520	1	-
충남	11	2	2,249,201	2	-
전북	11	1	1,752,029	1	-
전남	10	7	1,778,545	1	-
경북	12	3	2,567,565	2	-
경남	25	1	3,252,634	3	2
제주	5	1	669,354	-	-
계	451	29	51,817,499	48	3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실제 산후조리 수요와 지역별 공급격차 해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후조리 수요는 총인구뿐 아니라 출생아 수, 분만건수, 가임기 여성인구, 기존 산후조리원의 수·정원·입실률 및 분만의료기관 접근성 등에 영향을 받음.

- 위 표를 보면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은 서울 114개소, 경기 147개소로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 8개소, 전남 7개소 등 민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다수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는 94개 시·군·구는 모두 인구 100만명에 미달하므로 개정안의 인구기준은 미설치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 현황 >

(단위: 개소)

지역	지자체수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서울	25	-	-
부산	16	3	중구, 영도구, 사상구
대구	9	3	중구, 남구, 군위군
인천	10	4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1	동구
대전	5	2	중구, 대덕구
울산	5	1	울주군
세종	1	-	-
경기	31	7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18	6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11	8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15	9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14	11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22	14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지역	지자체수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경북	22	14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18	11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2	-	-
합계	229	94	9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선정시에는 인구 수 이외에도 출생아 수, 분만건수, 기존 공급량, 이용률, 이동거리 및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나아가 개정안은 국가의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안 제21조제1항 제10호를 신설하면서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김도읍의원이 2026년 7월 10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공공산후조리원 국비보조를 신설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을 함께 개정하여 지방비 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219893) >

현 행	개 정 안(김도읍의원안, 2219893)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u>보조한다</u> .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② ----- ----- -----보조하고,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수 기준으로 의무화하고 그 설치·운영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추진 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민간과의 경쟁 및 마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산후조리원협회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산모들의 선택권 감소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일정 인구수 이하의 경우에는 산후조리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만큼 이용 가능한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정 인구수 이상의 경우에는 기 구축된 산후조리 인프라가 있어 추가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인구 수, 출생아 수), 산후조리원 및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현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일정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방사무로,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추진 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21조제1항제10호의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국고보조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중 검토 필요
경기도	생물학적 출산가능 산모의 급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중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의무를 두는 것은 민간과의 경쟁 및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	지역별 출생아 수, 민간산후조리원 분포, 이용수요,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재정여건 등이 상이한 상황이므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산후조리원 협회	민간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추가 설치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 초래, 결과적으로 산모들의 선택권 감소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3.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박지혜의원안)

- 개정안은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18(공공형 산후조리원 의 지정) ① 산후조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u>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그 밖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생 략)</u>	<u>제15조의19(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생 략)</u>	<u>② 산후조리원 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생 략)</u>	<u>제15조의20(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현행 제15조의18과 같음)</u> <u>제15조의21(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현행 제15조의19와 같음)</u> <u>제15조의22(산후조리원 평가) (현행 제15조의20과 같음)</u>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생략)	제15조의23(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현행 제15조의21과 같음)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생략)	제15조의24(모자동실 운영) (현행 제15조의22와 같음)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지정하여 공공성(이용요금 인하 등)을 부여하고 민간 대비 낮아진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시설을 공공형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유사 제도로 「영유아보육법」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음(같은 법 제30조의2 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신규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와 재정 부담 없이 기존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의 공공성을 비교적 빠르게 넓히려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산후조리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26년 6월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선정하여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고 그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면서도(안 제15조의18제2항) 국가가 공공형 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의18제5항).
-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신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 산후조리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하고 국가는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등을 소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율체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의19).

○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이 343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산모는 이용권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자율성·활용성·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공공형 산후조리원 시행이 가능하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나 산후조리원 이용권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이용권 지급은 사업중복 및 수혜 편중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 및 부산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후조리원협회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현행법 체계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및 조례를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에 공공성을 보완·강화하는 자체 사업 시행 가능함. ※ (사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26.6.~'27.5.) : 서울시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 중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고, 그 일부를 시에서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수요·공급 실태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여야 할 지방 고유사무임을 감안할 때,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신중 검토 필요 □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산후조리원 이용권 도입 및 국가 지원은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	현재 출산지원 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경비지원,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이용권 지급은 사업 중복 및 수혜 편중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 검토 필요
경기도, 부산시	지역 간 형평성, 공공성 확보, 행정관리 측면, 정책 우선순위 왜곡 등의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 필요
산후조리원 협회	민간 산후조리원을 기반으로 한 공공형 산후조리원 제도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임

4.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 마련 (백혜련의원안)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유재산 무상 대여 대상에 추가하고, 무상 대여 요건을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u>필요</u>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협회</u> 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 <u>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u> ----- -----.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뉨.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함(같은 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가 사용료 면제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에도 같은 법 제47조제1항이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무상 사용허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같은 시행령 제32조제6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초기 시설투자와 장기 운영이 필요한 사업에는 1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별도의 무상 대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르지 않는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의 특례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음(같은 법 제4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서는 이미 「모자보건법」 제22조를 국유재산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 이에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3)을 함께 발의하였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219673) >

별표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산후조리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유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과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여를 인정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한 축조 등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대여받은 후에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다른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산후조리원협회는 적용 대상을 인구 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 ☐ 다만, 국유재산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다른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후조리원 협회	☐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분만취약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공감. 국유재산 무상대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적용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여가 모든 지자체에 제한없이 적용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무분별한 설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로 인해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경쟁 위축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발

5.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김도읍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하며 의료취약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18(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자녀인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2.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임산부</u> <u>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u>

	<u>1항에 따른 장애인인 임산부</u> 4.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의 <u>임산부</u> 5.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u>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u>임산부</u>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인 <u>임산부</u>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기준,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 ~ 제15조의22 (생략)	제15조의19 ~ 제15조의23 (현행 제15조의18부터 제15조의22까지와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신 설>

② -----

-----보조하고,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0호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170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이 343만원임. 이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고자 하여도 전국 480개 산후조리원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9개에 불과한 상황임.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80	29	451	69.1	55.9	9.5	13.4	170	343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자녀인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의18).

□ 참고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지역 및 개소수를 살펴보면, 의료취약지는 총 9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산후조리원은 2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산후조리원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 >

지역	지자체수	의료취약지(산후조리원 수)		인구감소지역(산후조리원 수)	
서울	25	-	-	-	-
부산	16	-	-	3(2)	서구(1), 동구(1), 영도구
대구	9	1	군위군	3(1)	서구(1), 남구, 군위군
인천	10	2	강화군, 옹진군	2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	-	-	-
대전	5	-	-	-	-
울산	5	-	-	-	-

지역	지자체수	의료취약지(산후조리원 수)		인구감소지역(산후조리원 수)	
세종	1	-	-	-	-
경기	31	5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여주시(1), 연천군	2	가평군, 양평군
강원	18	15(10)	고성군, 동해시(2), 삼척시(1), 속초시(1), 양구군(1), 양양군(1), 영월군(1),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1), 태백시(1),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1), 횡성군	12(6)	고성군, 삼척시(1), 양구군(1), 양양군(1),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1), 태백시(1),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1), 횡성군
충북	11	8(1)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1)	6(1)	제천시(1),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충남	15	11(6)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3),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2),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1)	9(1)	논산시(1),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4	9(1)	고창군, 남원시(1),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1)	고창군, 남원시(1),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전남	22	17(4)	강진군(1),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1),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1),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1)	16(3)	강진군(1),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1),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1)
경북	22	15(3)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1),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1),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1),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4)	안동시(1),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1),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1), 울릉군, 울진군(1),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8	14(3)	거제시(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1),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1),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1),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2	1(1)	서귀포시(1)	-	-
합계	229	98	98(29)	89(20)	89(20)

주1: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함

주2: 음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표시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용료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후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적정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산모는 이용비가 지급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자율성·활용성·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후조리원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신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 산후조리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하고 국가는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등을 소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율체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산부에게 이용비를 지원하더라도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관외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산후조리원 선택기준은 집·병원에서의 거리가 59.1%로 가장 높았고, 가성비 좋은 시설·프로그램 32.5%, 저렴한 가격 19.9% 순이었음(중복응답).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 재정 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조함이 타당하고, 국비 지원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기도에서는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후조리원협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지원의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재정 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조함이 타당 * 현재에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164개소) □ 또한, 출생초기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신중 검토 필요 □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방사무로,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필요
경기도	□ 산후조리 비용 관련 각 지자체별로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며,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음.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함
산후조리원 협회	□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이용료 지원에는 찬성함.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정책은 재정 건전성, 운영 효율성, 지역 내 서비스 공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지원의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00